

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64 |
|----------|----|

제의연월일 : 2014. 8. 22.
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

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(활동기간 - 구성일로부터 6 개월)

<참고사항> ----- **관련근거**

○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-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설치,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
-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함.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 설치)

-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

○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(위원의 선임)

-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

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
특별위원회 위원 추천(안)

| 연번 | 성명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|
| 1 | 공병건 의원 | 연수2 |
| 2 | 김정선 의원 | 용진 |
| 3 | 박종우 의원 | 남동4 |
| 4 | 신영은 의원 | 남동2 |
| 5 | 유제홍 의원 | 부평2 |
| 6 | 이강호 의원 | 남동3 |
| 7 | 이영훈 의원 | 남구2 |
| 8 | 정창일 의원 | 연수1 |
| 9 | 조제자 의원 | 계양2 |
| 10 | 최석정 의원 | 서구3 |
| 11 | 허준 의원 | 비례 |